



# 노후 소화기(10년 경과) 폐기 안내문



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노후소화기에 대하여 교체·폐기 및 성능확인검사 등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〈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〉

- ◆ 화재예방,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5
  -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용품은 교체
  - 소방용품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 연장가능
- ◆ 화재예방,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
  - 내용연수 대상품목 : 분말소화기(내용연수 10년)
- ◆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 2
  -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화기는 1년 이내에 성능확인검사 실시
  - 성능확인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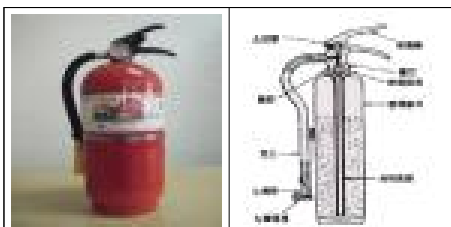
## ◆ 노후소화기 폐기 방법

- 변경 전 : 강남소방서 검사지도팀 (☎ 568-4164)
- 변경 후 : [강남구청 청소행정과](http://www.gangnam.go.kr) (☎ 3423-5968)

※ 『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 3.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91-19-00 폐소화기류』 및 『서울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1조 생활폐기물의 처리』에 규정하고 있음.

## ◆ 기타 안내사항

- 노후소화기 교체·폐기 및 성능검사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적합하게 소화기 설치(축압식 소화기로 교체)해야 함.
- 소화기 점검요령



### - 소화기 압력계 확인방법 -

녹색 범위	적색 부분	황색 부분
정상/사용가능	과압/사용가능	압력부족/사용불가